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6. 9.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6년 6월 12일, 윤건영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6년 7월 1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6. 8. 24.)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 8. 26.) 상정, 축조심사, 의결(원

안가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026.9.1.)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

반토론, 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윤건영의원)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자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제정됨.

그러나 여러 조항에 오는 7월 출범할 예정인 광주전남통합특별시에 관한 내용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이라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생략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이해식)

현행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이라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원안의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쳤음.

[붙임]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 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3조제2항 중 “광역시”를 “통합특별시·광역시”로 한다.

제24조 후단 중 “광역시장”을 “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1호 중 “광역시세”를 “통합특별시세·광역시세”로 한다.

제29조의2제1항 중 “특별시장 및”을 “특별시장, 통합특별시장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특별시장 및”을 “특별시장, 통합특별시장 및”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특별시장 및”을 “특별시장, 통합특별시장 및”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의2(지방채 발행의 제한) 지방채는 이 법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발행할 수 없다. 1. ~ 18. (생략) <u><신설></u>	제11조의2(지방채 발행의 제한) ----- ----- -----. 1. ~ 18. (현행과 같음) <u>1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를 위한 특별법」</u>
제23조(보조금의 교부) ① (생략) ② 특별시· <u>광역시</u> ·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군 및 자치구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③ (생략)	제23조(보조금의 교부) ① (현행과 같음) ② ----- <u>통합특별시·광역시</u> ----- ----- ----- ----- ----- ----- -----. ③ (현행과 같음)
제24조(국고보조금의 신청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관서(「국가재정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를 말한	제24조(국고보조금의 신청 등) - ----- ----- ----- -----

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4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시·군 조정교부금) ① 시·도지사(특별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의 27퍼센트(인구 50만 이상의 시와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 경우에는 47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할 시·군 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1. 시·군에서 징수하는 광역시
세·도세(화력발전·원자력발
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통합특별시장 · 광역시장

제29조(시·군 조정교부금) ① -

1. -----통합특
별시세 · 광역시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총액

2. (생략)

② ~ ④ (생략)

제29조의2(자치구 조정교부금) ①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통세 수입의 일정액을 조정교부금으로 확보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의 자치구 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화력발전·원자력발전에 대한 각각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할 자치구에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금액은 같은 호에 따른 자치구 및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시·군에 균등 배분한다.

1. 2. (생략)

③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지방세법」 제43조제2호의 장외발매소(같은 법 같은 조 제1호의 경륜등의 사업장과 합

2.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9조의2(자치구 조정교부금) ①

특별시장, 통합특별시장 및---

-----.

② 특별시장, 통합특별시장 및

-----.

1. 2. (현행과 같음)

③ 특별시장, 통합특별시장 및

게 있는 장외발매소는 제외한다)에서 발매한 승자투표권등에 대하여 자치구에서 징수한 레저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장외발매소가 있는 자치구에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 ----- ----- ----- ----- ----- -----.
--	---